

3 개장허가(법 제27조)

가. 허가유형 : 사전허가제

나. 허가신청 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다.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라. 허가신청기관 :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

마.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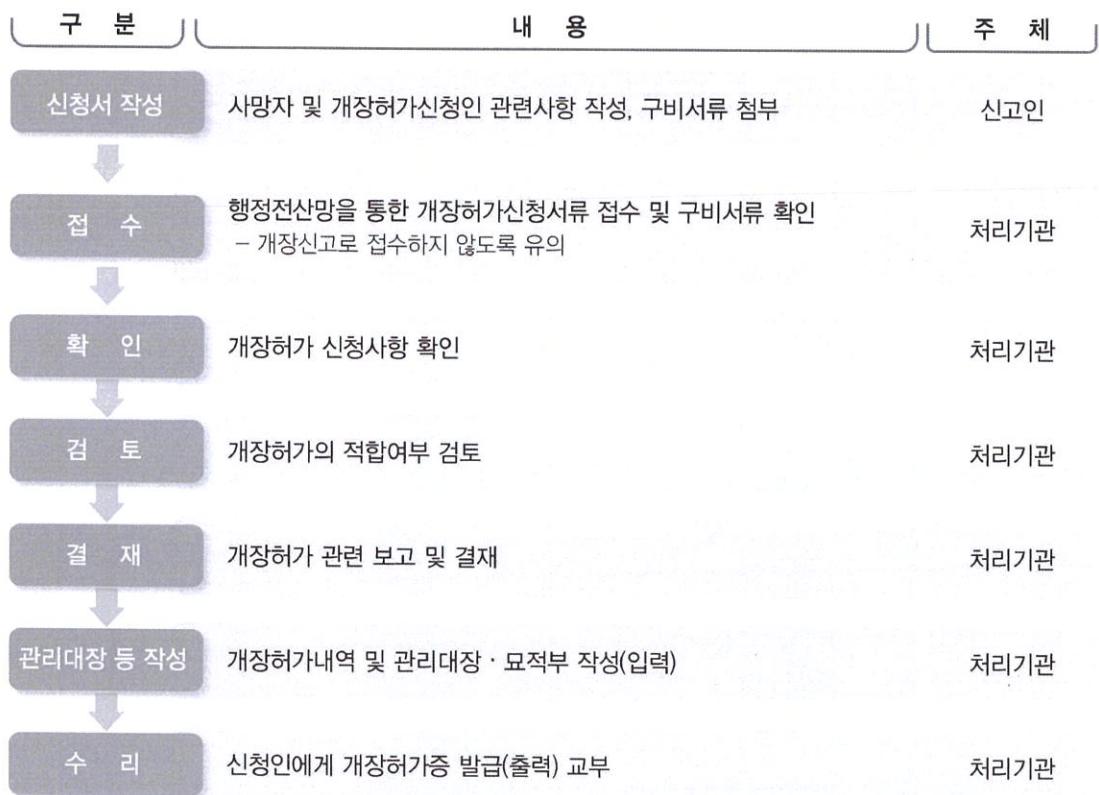
- ① 기존 분묘의 사진
- ②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③ 묘지 또는 토지가 가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④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⑤ 통보문 또는 공고문

바. 처리기간 : 3일

사.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하거나,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 처리절차



4 유형별 개장절차

가. 묘지 소유자(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시행규칙 제2조)

- ⦿ 사전신고 후 개장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음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8조)

(1)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 해당 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
- 개장
 - 협의가 완료된 경우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등이 개장 신고 후 개장
 -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소송 등으로 집행력을 확보한 후 토지 소유자 등이 개장신고 후 개장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의 개장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해당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인정
 -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설치한 경우, ② 타인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하여 별도 특약 없이 타인에게 토지만을 처분한 경우에 취득하게 되며, 이 경우 분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분묘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존재하여야 함(95다29086, 판결 등 다수 참조)
 -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소송을 통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
- ※ 단,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제한됨(법 제27조제3항)

(2)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공고 결과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설치자·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
- 시·도 및 시·군·구는 토지 소유자 등이 분묘 개장공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란(분묘 개장공고 전용메뉴)을 만들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자에게 공고문 안 작성 지도 및 공고방법 안내
-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 번째 공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 개장허가 신청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준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문을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함

개장허가 신청서류 중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토지 소유자 또는 묘지 설치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일간신문·홈페이지 공고 또는 인근주민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그 연고자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였으나, 그 연고자 등을 알지 못한 사유를 말함

- 개장절차의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또는 봉안기간 등 당초 허가 신청서 내용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

○ 개장허가증의 교부

- 시장등은 허가신청 사항을 확인한 다음 개장허가증을 교부
-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10년간 봉안하였다가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함